

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현찬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80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2일

발 의 자 : 이현찬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고병국, 유 용, 김소양,
김제리, 이병도, 김화숙,
이준형, 김달호, 최웅식,
송아량, 최 선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장애인복지법령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중증장애인 용어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수정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 중 “중증장애인”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)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발달장애인 등 <u>중증장애인에</u> 대한 평생교육 지원</p> <p>5. ~ 8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4조(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</u>-----</p> <p>5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